

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연월일	2022. 6. .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안연월일 : 2022. 6. 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경상북도 시·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」 개정('22. 4. 29.)에 따라 구미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개정하고, 그 외 위임 근거 추가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개정 위임 규정 추가(안 제1조)
-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(안 제2조)
- 조항 추가 등 조 번호 정비(안 제7조~제7조의3)
- 부위원장 명칭을 간사로 수정(안 제11조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
 - 「경상북도 시·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」 제2조 별표

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제71조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11명이내”를 “12명이내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청원심사등”을 “청원심사 등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단서 중 “총선거후”를 “총선거 후”로, “폐회기간중”을 “폐회기간 중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상임위원중”을 “상임위원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“폐회중”을 “폐회 중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.

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, 같은 조(종전의 제7조의2) 제2항 중 “활동보고서”를 “심사보고서”로 하며,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예산결산특별위원회) ①예산안·결산·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제8조제3항 단서 중 “폐회중”을 “폐회 중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되,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.

제11조의 제목 “(부위원장)”을 “(간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부위원장”을 “간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부위원장은”을 “간사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부위원장이”를 “간사가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운영·의사등”을 “운영·의사 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 중 “부위원장”을 “간사”로 한다.

제65조제3항 중 “부위원장”을 “간사”로 한다.

②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부위원장”을 “간사”로 한다.

③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과 제5항 중 “부위원장”을 “간사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제71조----- ----- ----- ----- --.
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기획행정위원회 <u>11명 이내</u>	2. ----- <u>12명 이내</u>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.	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----- ----- <u>청원심사 등</u>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. 다만, <u>총선거후</u>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<u>폐회기간중</u> 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.	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----- ----- ----- <u>총선거 후</u> ----- ----- <u>폐회기간 중</u> ----- ----- -----.

② (생 략)

제6조(상임위원장) ① (생 략)

②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

③ (생 략)

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(생 략)

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③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·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(생 략)

<신 설>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상임위원장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 상임위원 중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-----
-----.
--- 폐회 중-----
-----.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② (현행 제4항과 같음)

제7조의2(예산결산특별위원회) ①
예산안·결산·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위

제7조의2(윤리특별위원회) ① (생략)

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차연도 6월말까지 재임하고,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(다만,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)

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.

② (생략)

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의 선임) ① (생략)

②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.

제11조(부위원장)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

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제7조의3(윤리특별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
----- 심사보
고서-----

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

----- . ----- 폐회 중-----

----- .

제9조(위원의 선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되,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.

제11조(간사) ①-----
간사 -----.

② 간사는 -----

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<u>부위원장이</u> 위원장의 직무를 대 리한다. 제13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 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<u>운영·의사등</u>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.	-----. ③----- <u>간사가</u> ----- -----. 제13조(준용규정) ----- ----- <u>운영·의사 등</u>----- -----.
---	---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71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경상북도 시,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」

【별표】 <개정 2022. 4. 29.>

경상북도 시·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(제2조 관련)

선거구명	의원 정수	선거구역
구미시 의원정수 25명(비례대표 3, 지역구 22)		
구미시“가”선거구	3	송정동, 원평동, 형곡1동, 형곡2동
구미시“나”선거구	2	선주원남동
구미시“다”선거구	2	도량동
구미시“라”선거구	2	지산동, 신평1동, 신평2동, 비산동, 공단동, 광평동
구미시“마”선거구	2	상모사곡동, 임오동
구미시“바”선거구	2	선산읍, 무을면, 옥성면, 도개면
구미시“사”선거구	2	고아읍
구미시“아”선거구	2	산동읍, 해평면, 장천면
구미시“자”선거구	3	인동동, 진미동
구미시“차”선거구	2	양포동